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4. 17 선고 2019가단55447 판결 [토지매매대금반환및손해배상 청구의
소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1. C 주식회사

2. 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4. 17.

주 문

1. 피고 D은 원고 A에게 6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2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4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2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이영은

별지